

#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9,471,349	11,684,140
일반회계	372,338,036	11,170,141
특별회계	17,133,313	513,999
기타특별회계	17,133,313	513,99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73,915	80,21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645	19
의료급여특별회계	1,275,238	38,257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609,880	18,296
주택사업특별회계	94,530	2,836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063,767	61,913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266,125	127,984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263,000	7,890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817,712	84,531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3,068,501	92,05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15,08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추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